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 2000. 6. 19
- 나. 제출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0. 6. 1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0. 7. 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제안이유

- 상수도의 누수로 인하여 사용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누수 부분이 지하로 발견이 곤란한 가정용 수도전에 한하여 상수도 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1단계의 요율을 적용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정용으로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4개월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는 최종단계의 요율을 적용하고(안 제28조1항)
- 나머지 누수량에 대하여는 1단계 요율을 적용(안 제28조1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제340호 |
| 의결년월일 | 2000. 7. 6 (제79회) |

제출년월일 : 2000. 6. 1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상수도의 누수로 인하여 사용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누수부분이 지하로 발견이 곤란한 가정용 수도전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1단계의 요율을 적용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 주요글자

- 가정용으로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4개월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는 최종단계의 요율을 적용하고
(안 제28조1항)
 - 나머지 누수량에 대하여는 1단계 요율을 적용(안 제28조1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정용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누수의 경우에는 4개월 평균량은 요율의 최종 단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은 1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준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부천시수도급수조례</p> <p>제28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 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 정한다.</p> <p>(단서신설)</p> | <p>부천시수도급수조례</p> <p>제28조(요금의 조정) ①.....</p> <p>다만 가정용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고 지하</p> |

부분으로 발견이 곤란한 누수의 경우에 4개월
평균량은 요율의 최종 단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누수량은 1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